

(우)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~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48 / 전송(02)790-8911
보험정책국 국장 김기성(6574) / 보험팀장 손용석(6571) / 팀원 이연주(6548) / e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1648호

시행일자 2019. 12. 30.

수 신 각시도의사회장, 각전문과목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
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312호(2019.12.27.)
-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-2591호 (2019.12.27.)

3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」 제41조3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88호, 2019.12.24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바,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아울러,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가. 주요개정사항 : 치료재료 중 IV IN LINE FILTER(5 μ m), 고압용필터, 분리형 니들필터 등의 건강보험 급여목록과 급여상한금액 신설 및 비급여 목록 삭제

나. 시행일 : 2020년 7월 1일

다. 관련 문의 :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김미정 (044-202-2663)

- 붙임 : 1.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.
2. 별지 및 변경대비표 각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